

이론제
7-4

평양 국제토론회 토론회

《종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의 제문제

— 1993년 유엔인권소위원회 심리를 중심으로 —

1993, 11, 1~8

런던대학 초빙연구원, 변호사

도쓰카 에쓰로

《종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의 제문제

— 1993년 유엔인권소위원회 심리를 중심으로 —

1. 유엔차별방지, 소수민족보호소위원회 (인권소위원회)는 8월 25일, 전시노예제에 관한 결의 (결의번호 1993/24)를 채택하고 내전을 포함한 전시의 조직적강간, 성노예제, 및 노예류사관행에 관한 고도의 연구를 할 특별보고자를 임명할것을 결정하였다. 이 인권소위원회의 전문가위원인 린더 차베스녀사 (미국출신)가 특별보고자로 임명되었다. 이것은 일본제국군과 정부에 의한 제2차 대전중의 성노예제, 즉 《종군위안부》 문제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다. 일본이 유엔인권기관에 의하여 공개조사를 받는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사변이다.

《종군위안부》, 강제련행문제에 대하여서는 1992년 2월 이후 세계교회리사회 (WCC), 국제법률가위원회 (ICJ), 국제화해단체 (IFOR), 해방기구 (LIB), 국제민주법률가협회 (IADL), 국제교육개발협회 (IED), 국제폐지련합 (IAF),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남조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필리핀 군사적

성노예문제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등 많은 국제, 국내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조선 정부가 유엔에 조사와 권고를 요구하여 적극 호소하여왔다. 그 요청이 실현된것이다.

이리하여 유엔에 의한 《종군위안부》, 강제련행문제 해결을 위한 길이 넓게 열렸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유엔관계자들은 이 결의가 채택된것을 《보기 드문 속도》라고 평하였다.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국내적 혹은 국가간 교섭에 의한 해결의 곤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엔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많은 유엔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활동하여왔다. 인권소위원회와 관계비정부기구, 관계정부들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획기적인 결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론하였고 일본 내외에 크게 보도되었기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 문제에 대한 유엔의 연구는 국제법상의 제문제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된다.

아래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겠다.

2. 일본의 대중보도수단들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았지만 유엔광보담당부국이 올해의 인권소위원회의 초점으로 취급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중대인권침해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자 반보벤교수의 최종보고서 (E/CN.4/Sub.2/1993/8)이다.

최종보고서가 제안한 원칙, 지침은 관계자들이 필독해야 할 문헌이다.

그 문헌의 요점 또는 관심을 돌려야 할 점을 말하겠다.

첫째로, 국가에 의한 직접침해행위 (행위뿐만아니라 비행위에 의한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중대인권침해인 노예, 노예류사관행 등 일정한 범위의 피해자는 개인으로서 가해국가에 대하여 직접배상,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것이 밝혀졌다. (일반원칙 1 및 6)

당연한 결과인데 우리들의 주장이 국제법의 국가책임론에 기초하여 인정되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힘으로 된다.

둘째로, 국가가 직접적가해자로서 책임을 질뿐만아니라 개인 등 제3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물론 국가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를 포함하는것은 당연하겠지만), 국가가 국제법상의 범죄책임자에 대한 국제법상의 처리의무를 태공한 경우에도 피해자 개인은 국제법상의 불처벌책임을 커야 할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필자의 금년도의 노예제부회이래의 주장도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

된다. (동 2)

일반 원칙 2가 말하는 국가의 인권존중 의무, 인권의 확보 의무는 국제법상으로 진상을 조사할 의무 및 이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에는 범죄자에 대한 수사, 소추, 처벌 의무가 포함될 것이다.

이 점은 독일과 달리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의 책임자를 스스로 재판하지 않고 지나온 일본에 있어서 극히 중대하다. 《종군위안부는 개인들에 의해 감행된 것이다》 《개인의 배상, 보상 청구권은 다국간 또는 쌍무적 조약으로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항변도 이 원칙앞에서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 《불처리를 원인으로 하는 배상, 보상 의무》라는 원칙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되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실례로 해설하여보자.

일본 정부는 내용적으로는 불충분하지만 금년 8월 4일 국내에서, 8월 17일에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일본 제국군, 경찰, 관리들이 조선인 여성 등을 《위안부》로 만들기 위해 업자를 리용하거나 직접 강제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위안소에 련행하여 본인의 의사와 어긋나게 일본제국군 병사들에 대한 성봉사를 강요했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승인된 최저한의 사실에 기초하여도 일본정부는 국제관습법상으로도, 조약상으로도 아래와 같이 가해자처벌의무를 지니고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중요한것은 《종군위안부》에 대한 가해행위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는 성적노예제이며 동시에 인도에 대한 죄를 구성한다고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지적하고있는바이다. 일본정부의 관할권의 범위안예칙 감행된 국제범죄의 책임자에 대하여 현일본정부는 일본제국정부를 이어서 범죄자에 대한 수사, 소추, 처벌의무를 진다는것은 두말할것 없을것이다. 또한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하여 시효가 발효된다는 그런 국내법규정은 국제관습법위반이라고 생각되므로 가령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무효로 하지 않을수 없다.

국제법상으로는 일본정부의 처벌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있는것이다.

둘째로, 강제노동조약 및 추업을 위한 인신매매 금지
3 조약위반이, 문제로 된다.

강제노동조약은 여자들의 강제노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위안부》녀성에게 일본제국군 장병들에 대한 성
봉사라는 노동을 강요한것도 여자들의 강제노동을 금지한
이 조약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 조약은 이러한 강제노동을 시킨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채약국들에 의무화하였다.

문제는 전시 등의 긴급사태가 있으며 강제노동조약의
적용을 면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규정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참가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제국안
의 어디서나 누구에 대하여서도 그 어떤 강제노동도 허
용된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을것이다. 긴급사태때에만
허용되는 적용제외규정이므로 일본정부가 이 적용제외규
정의 적용을 요구한다면 매 전쟁의 구체적상황하에서 또
개개의 구체적긴급사태하에서 최소한도의 강제노동을 정말
로 부득이하게 필요불가결의것으로 해야 할 사정, 관련
성, 필연성, 합당성을 입증하는것이 필요할것이다. 또한
인종, 언어,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하는 적용제외에
관한 차별적취급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이점에서 긴급사태인 경우에 적용제외를 요구하는것을 허용한 정치적·시민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조의 명예훼손규정을 해석하는 수법이 참고로 될것이다.

전시하의 일본제국 병사들의 성적요구의 긴급성과 조선 여성들에게만 성적노예제를 강요해야 할 사정, 관련성, 필연성, 합당성 등의 입증은 불가능할것이다.

강간예방, 성병의 방지, 병사들의 사기향상 등 어떤 이유를 들어보아도 매우 품위가 없고 불합리하고 조리에 맞지 않은것으로밖에 될수 없다. 강제로동을 정당화해야 할 긴급성의 입증은 성공하지 못할것이다.

또한 추업을 위한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3조약은 성년녀성을 강제 등으로 매춘을 위해 련행한 경우 및 미성년(21살미만)녀성은 본인이 동의하였을 경우라도 이것을 매춘을 위하여 권유한 경우에는 다 가해자를 처벌할것을 채약국에 의무화하고있다.

성년자도 미성년자도 다 강제로 또한 속히위 《종군위안부》로 되였다. 그 모집, 련행, 관리, 성적노예취급실태는 3조약위반행위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3조약의 규정상 일본정부가 그 노예화에 관여한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것은 명백하다.

문제는 이 3조약에는 조선 등 식민지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 데로부터 조선에서의 《종군 위안부》련행행위에는 3조약이 적용될수 없다고 해도 되는가 어떤가이다.

저는 조선에서 여성들이 련행된 경우에도 일본제국의 속인적, 속지적 관할범위안에 들어간 사실이 립증된다면 충분히 적용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인 《위안부》들은 일본제국 군인, 경찰, 관리 또는 이자들의 지시를 받은자들에게 련행당한것이 실태이다. 이처럼 일본제국 관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관제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범행자들은 일본제국의 속인적관할범위안에 들어있다.

더우기 피해자 여성들의 대다수는 일본령토로 간주되는 일본선박으로 련행, 이송된 사실이 있다. 게다가 《종군 위안부》정책의 각성, 그 실시를 위한 명령, 수권, 허가 등 중추에 의한 범행행위는 일본제국군, 정부의 중추가 있던 도표 즉 일본제국내지에서 감행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판단하면 이런 범죄행위는 일본제국내지의 속지적관할의 범위안에서 감행된것이기때문에 식민지제외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조약들의 적용을 모면할수 없다고 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현재도 이 조약들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범죄를 감행한 자를 처벌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3. 지금까지 일본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국제법
상의 문제로서 《전쟁피해자》와 차별문제가 있다.

첫째로 일본정부는 연합국의 《부려를 확대한 자를 포
함한 모든 전쟁범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한 원칙을 수락하였다. (1945년 7월
26일 일본제국정부에 의한 포츠담선언의 수락)

그리고 일본정부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와 일본 국내
및 국외의 다른 연합국 전쟁범죄법정의 재판을 수락》하
였다. (1952년 조약 제5호 제11조)

둘째로 일본정부는 《일본국의 포로로 있던 사이에 부
당한 고난을 당한 연합국군대의 구성원에게 보상할 념원
의 표현으로서》 부당하게 얼마안되는 금액이기는 하였으
나 적십자국제위원회를 통하여 보상하였다. (평화조약 제
16조)

그런데 아세아인 특히 조선인 《전쟁피해자》에 대하여
보면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의 피해자에 해당되어야
할 《종군위안부》, 강제런행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차별의무도, 보상의무도 수락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산
생된 차별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외의 모든 법(조약
을 포함한다고 해야 한다)에 대하여 《법앞에서의 평
등》을 보장하는 정치적시민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9년 조약 제7호) 제3의 26조에 위반된다고
해석해야 할것이다. 여성《전쟁피해자》인 《종군위안부》
녀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이밖에 녀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1985년 조약 제
7호) 제1.2.3조에도 위반된다고 생각된다.

저는 일본제국 군, 정부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인
《종군위안부》를 일본제국군에 봉사한 군속으로서·취급하
여 그들과의 사이에서의 차별적취급을 보상의 법적근거로
하는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피해감정, 실태로
보아 오히려 《전쟁피해자》로서 법적구성을 하는것이 적
합하다고 생각한다.